교통부 관광국 국제관광객 유치 가속 확대 방안 여행업 해외 관광 단체 유치 장려 실시 요점

1.교통부 관광국(이하 본국이라 약칭함)은 중앙정부의 감염병 발생 후 경제적, 사회적 회복력 강화 및 전 국민의 경제적 성과 공유를 위한 특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본국 여행사와 해외에 합법적으로 설립된 단체 여행사가 협력하여 해외여행 단체를 유치하도록 장려하고 국제 여행객의 대만 입국을 촉진하며, 코로나19 영향 이전의 대만 방문 여행객 수준으로 신속한 회복을 지향하고, 연간 국제 여행객의 대만 방문 목표 수치를 달성하기 위해 본 요점을 제정한다.

2.본국에 입안 등록된 종합여행사 또는 갑종 여행사(이하 신청자라 약칭함)는 해외 현지국에서 합법적으로 설립한 단체여행사와 협력하여 비 본국적 여행객으로 구성된 관광단체를 대만에 여행하도록 촉진하고, 여정이 2박 3일 이상인 자는 본 요점 규정에 따라 장려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3.전 항목 규정에 부합하는 신청자는 여행 기간이 모두 본 요점 발효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여행단체 출발 10영업일 전까지 단체 장려 보조금 신청서(별첨 1)를 첨부, 해외 단체여행사가 서명한 위탁서류, 단체 인원수 및 예정 일정을 제공하여 장려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본국은 예산지출 상황에 따라 보조금 신청 중단을 사전에 공고할 수 있다.

4.신청자는 각 관광단체별로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50개 단체의 신청 건을 한도로 한다. 또한 본국의 다른 장려 (보조) 방안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그 장려 보조 금액은 다음 단체 인원수 및 여정 일수에 따라 정한다.  
(1) 4~7인: 5,000NTD, 6박 7일 이상 일정인 경우, 1만NTD로 인상.  
(2) 8~14인: 1만NTD, 6박 7일 이상 일정인 경우, 2만NTD로 인상.  
(3) 15~49인: 2만NTD, 6박 7일 이상 일정인 경우, 3만NTD로 인상.  
(4) 50인 이상: 4만NTD, 6박 7일 이상 일정인 경우, 5만NTD로 인상.

5.장려 보조금 신청은 본국의 심사 동의를 거친 자로, 신청자는 여행 단체가 대만을 떠난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본국에 보조금을 신청한다.

(1) 보조금 신청서(별첨 2 참조)

(2)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일정 증명서 및 각 관광단체의 인원수에 따른 숙박 증명서, 항공기 탑승 증명서 및 보험 증명서

(3) 외국인 단체 여행객 명단: 성명, 국적, 여권번호 포함(또는 대만 입국 비자 번호 등 여행객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기본자료를 포함해야 하며, 현지 법률 규정의 제한으로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 증명서 제출 후 면제 가능)

(4) 대만 국내 접객 여행사(랜드사) 서약서(별첨 3)

(5) 대만 국내 접객 여행사(랜드사) 수령증 및 해외단체 모객 여행사 수령증(별첨 4)

6.보조금 신청은 본국의 심사를 거쳐 동의한 자로, 장려 보조 금액은 아래의 규정

비율 및 방식에 따라 제공된 계좌로 나누어 지급한다.

(1)대만 국내 접객 여행사(랜드사): 40%, 대만 달러로 지급.

(2)해외 단체 모객 여행사: 60%, 본국에서 송금 지출한 당일 대만 은행 현물 환율

기준 미국 달러로 환산 후 지급.

7.신청자가 제출한 신청 건이 본 요점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본국은 이를

기각하고, 보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기한 이내에 보완 및 수정해야 하며, 보완

및 수정 통지 후에도 기한 내에 보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이를 기각한다.

8.신청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국은 장려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미 장려 보조 승인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는 이를 취소 또는 폐지하고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서면 행정처분을 통해 지급된 각 장려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사기, 뇌물, 협박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2)신청서류 및 자료에 은폐 또는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3)신청 항목이 기타 법령 규정에 따라 동일한 성격의 장려, 보조 또는 보조금을

받은 경우

(4)보조금 집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본국에서 파견된 직원을 회피, 방해 또는

거부하는 경우

전항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명시된 상황 중 하나인 경우 본국은 해당 신청자에 대하여 본국 및 산하 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장려(보조)를 3년간 정지한다.

9.본국은 관련 기관, 법인 또는 공공 협회 단체에 위탁하여 경비 신청, 심사 및 취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별첨1

**장려보조금신청서**

|  |  |  |  |  |
| --- | --- | --- | --- | --- |
| 장려보조금신청안건번호: (이란은기재하지마시오) | | | 신청일자: 년 월 일 | |
| 기  본  자  료 | 신청자 | 대만국내접객여행사(랜드사): | | □종합 □갑종  등록번호: |
| 해외단체모객협력여행사: | | 국가: |
| 대만방문관광단체 | 대만체류기간: | | |
| 일수: □2박3일이상 □6박7일이상 | | |
| 인원수: □4~7명 □8~14명 □15~49명 □50명이상 | | |
| 장려보조금신청금액 | 신대만달러NTD: 위안 | | |
|  | 신청서류 | □해외단체모객여행사위탁서류 □단체인원수 □여행예정일정  □기타: | | |
| **신청자는아래해당내용을상세히숙지하고다음항목에동의합니다:**   1. 본신청서및관련서류에기재한모든사항은사실대로작성되었으며,내용이사실이아닌경우관련 법적책임을집니다.동시에"교통부관광국의규정에따라국제관광객유치가속확대방안여행업 해외관광단체유치장려실시요점"규정에따라처리됩니다. 2. 이신청건은교통부관광국에서제공하는다른장려(보조)방안과중복신청하지않습니다. 3. 신청자는교통부관광국에서심사검토를위해요구하는기타관련문서를제공할의무가있으며,교통부관광국이본장려보조금지원신청건을기각하거나승인할수있음을이해합니다. 4. 본장려보조금안건이교통부관광국의심사및승인을받은후신청자는규정에따라보조금을신청해야하며지정된마감일까지신청서를제출하지않은신청자는보조금신청을포기한것으로간주합니다.   **신청자 서명:**   |  | | --- | | 교통부관광국심사결과:  □본안신청에동의함  □본안신청을기각하며,원인은다음과같음:  □민간단체보조(기부)운영시스템CGSS로그인  교통부관광국담당부서날인:    일자: | | | | | |

별첨2

**보조금지급신청서**

|  |  |  |
| --- | --- | --- |
| 보조금지급신청안건번호: (이란은기재하지마시오) | | 신청일자: 년 월 일 |
| 신청자 | 대만국내접객여행사(랜드사): | □종합 □갑종  등록번호: |
| 해외단체모객협력여행사: | 국가: |

**(신청자는아래사항을상세히작성및확인하여체크하고,관련서류를제공해주십시오)**

|  |  |  |  |
| --- | --- | --- | --- |
| 장려보조금신청안건번호: | | | 지급신청일자: 년 월 일 |
| 보  조  금  지  급  신  청  자  료 | 대만관광단체실제방문정보 | 대만체류기간: | |
| 일수: □2박3일이상 □6박7일이상 | |
| 인원수: □4~7명 □8~14명 □15~49명 □50명이상 | |
| 지급신청금액 | 총금액: 신대만달러NTD 위안  대만국내접객여행업(랜드사): 신대만달러 NTD 위안  해외단체모객여행사: 신대만달러NTD 위안 | |
| 지급신청구비서류 | 단체발주증명서  □해외관광단체모객여행사서명서류  □숙박증명서 □항공기탑승증명서 □보험증명서 | |
| □실제일정표 | |
| □외국인단체여행객명단:성명,국적,여권번호(또는대만입국비자 번호등여행객의신분을증명할수있는기본자료를포함해야하며,현지 법률규정의제한으로제공이불가능한경우관련증명서제출후면제 가능) | |
| □대만국내접객여행사(랜드사)의서약서 | |
| □수령증(원본,신청지급금액과동일해야함)  □대만국내접객여행사(랜드사)의수령증  □해외단체모객여행사의수령증  □지급계좌정보:  대만국내접객여행사(랜드사):(신대만달러NTD계좌):    해외단체모객여행사(USD계좌):  ※지급외화계좌명이해외단체여행사의이름이아닌경우서면으로설  명을첨부하십시오. | |
| **신청자는아래해당내용을상세히숙지하고다음항목에동의합니다:**   1. 신청양식의각사항은사실대로작성되었으며,첨부자료또한완전하고명료하게식별할수있습니다. 2. 여행단체가대만을떠난다음날부터 1개월이내에규정된서류를구비하여제출하였으며, 동일한 신청안건이교통부관광국에서제공하는다른보조금(지원)방안과중복하여신청되지않았습니다. 3. 신청자는교통부관광국이심사에필요한기타관련서류를제공할의무가있으며,교통부관광국이본 안건의지급신청을기각하거나조건부로승인할수있다는사실을이해합니다. 4. 실제대만관광단체인원수또는일정일수가원래장려보조금신청서또는본보조금지급신청서에기   재된내용과일치하지않을경우교통부관광국은실제관광단체인원수및일정일수에의거하여「교  통부관광국국제관광객유치가속확대방안여행업해외관광단체유치장려실시요점」규정에따라 계산합니다.  **신청자 서명:** | | | |

|  |
| --- |
| 교통부관광국심사결과:  □지급동의,장려 보조금총금액은신대만달러NTD 위안  규정된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배합니다:  　대만 국내 접객 여행사(랜드사): 신 대만 달러 NTD 위안  　해외단체 모객 여행사: 신 대만 달러 NTD 위안  　□보정 서류 또는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십시오  □본안 신청을 기각하며,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 단체 보조(기부) 운영시스템 CGSS 로그인  교통부 관광국 담당 부서 날인:  일자: |

별첨 3

대만 국내 접객 여행사(랜드사) 서약서

당사(　　　　　　　여행사)는 「교통부 관광국 국제관광객 유치 가속 확대 방안 여행업 해외 관광 단체 유치 장려 실시 요점 」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였습니다. 만약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관련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하며, 상기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여행사 명칭:

회사 대표자 서명:

여행사 인감:

중화민국 년 월 일

별첨 4

대만 국내 접객 여행사(랜드사) 수령증

본사는 교통부 관광국이 주관하는「교통부 관광국 국제관광객 유치 가속 확대 방안 여행업 해외 관광 단체 유치 장려 실시 요점」에 따른 장려 지원금으로 신 대만 달러 ○○○ 위안을 정히 수령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교통부 관광국

신청자: ○○○○○○

대표자:

회계:

담당자:

사업자등록번호 (통일 번호): ○○○

주소:

입금 은행: ○○ 은행 ○○ 지점(송금 계좌 통장 표지 사본 첨부)

계좌번호: ○○○

예금주: ○○○○○

중화민국 ○○○ 년 ○○ 월 ○○ 일

해외단체 모객 여행사 수령증

본사는 교통부 관광국이 주관하는 「교통부 관광국 국제관광객 유치 가속 확대 방안 여행업 해외 관광 단체 유치 장려 실시 요점」에 따른 장려 지원금으로 신 대만 달러○○○위안을 정히 수령하였습니다. (교통부 관광국 지급 당일 대만은행 현물 환율 기준 미화로 환산 후 지급)

위와 같이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교통부 관광국:

신청자: ○○○○○○

대표자:

회계:

담당자:

법인 등록 번호: ○○○

주소:

입금 은행: ○○ 은행 ○○ 지점(송금 계좌 통장 표지 사본 첨부)

계좌번호: ○○○

예금주: ○○○○○

○○ ○○ 년 ○○ 월 ○○ 일